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79호
------	---------

발의연월일 : 2025. 1. 21.

발 의 자 : 박정수, 구형서, 김민수,
신순옥, 박기영, 정광섭,
김응규, 김도훈, 정병인,
신영호, 이종화, 이철수,
방한일, 유성재, 편삼범,
이지윤, 이현숙, 윤희신,
박미옥, 김석곤, 김기서,
이정우, 홍기후, 오인환,
박정식, 안종혁, 이재운,
전익현, 이연희, 윤기형,
김복만, 오인철, 김옥수,
이상근, 안장현, 주진하,
최광희, 고광철 의원(38인)

1. 제정 이유

-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는, 흔히 메타버스(metaverse)라 불리는 가상융합기술은 최근 우리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에 깊이 관여하는 등 차세대 서비스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이에 충남도의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가상융합산업에서 충남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가상융합산업, 가상융합사업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다.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에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내용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
-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사업추진 등(안 제6조)

-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문인력양성, 연구시설·인프라 등의 조성 및 활용, 예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법률 제20352호, 2024.8.28.)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5.1.8., 여성가족정책과)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12.2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12.26.,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및 필요한 재원 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융합서비스 등을 도정 활용 및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가상융합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3.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추진
4.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
5.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6. 가상융합기술의 도정 활용 및 저변확대
7.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 유치
3. 관련 연구시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활용 지원
4.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및 투자 활성화
5. 관련 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6. 타 산업과의 융합 및 연계 지원
7. 관련 산·학·연·관 연구 협력 지원
8. 가상융합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내·외 마케팅 관련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가상융합산업기본법 [법률 제20352호, 2024. 8. 28.]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임대 등(이하 “개발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가상융합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시기준”이란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출시·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상 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비대상 사유서를 제출함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계획 수립_ 비용미발생
 - 제6조(사업추진 등)
 - 사업부서 2025년 추진중_ 기추진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 사업 위탁추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_ 비용미발생

<2025년 기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도비)		비고
		2024년	2025년	
계		4,836,000	3,636,000	
미래산업과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1,500,000	1,000,000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1,075,000	1,250,000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885,000	300,000	
문화정책과	충남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	556,000	556,000	
	충남 디지털·게임기업 육성	820,000	530,000	

자료 : 2024년 제2회추경 예산서, 2025년 본예산 예산서(부기명 기준)

2. 작성자: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budget20@korea.kr)